

2021년 제4차 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21. 10. 14(목) 11:00
2. 방 법 : 비대면회의(카카오톡)
3. 참석임원: 이사 총 10명중 8명 참석
대표이사 장영순, 상임이사 노희원, 이사 이상주, 이사 이충호,
이사 홍인식, 이사 방영순, 이사 신진상, 이사 고윤순

4. 심의안건: 제1호 의안 인천예림학교 제3차 추경안
제2호 의안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대표이사선임안
제3호 의안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이사선임안
제4호 의안 예규세칙 제·개정안

5. 회의내용

1) 성원보고

- 장영순의장 : 재적이사 10명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2) 개회선언

- 장영순의장 : 개회를 선언하다.

3) 전자회의록 접수승인

- 장영순의장 : 전자 회의록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은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접수·승인하기로 선포하다.

4) 안건심의

- 제1호 의안 : 인천예림학교 제3차 추경(안)

- 장영순의장 : 제1호 의안 인천예림학교 제3차 추경안을 상정하다
- 장영순의장 : 인천예림학교에서는 당초 5,736,956천원에서 103,218천원이 증액된 5,839,174천원으로 증액내용은 목적사업비 확정으로 인한 전자철판구입 설치 및 공기순환장치설치설계비 등임을 설명하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보내드린 자료로 대신하며 이사님들께 의견을 요청하다.

- 흥인식이사 : 제출된 원안에 동의하다.
- 이상주이사 : 동의하다.
- 신진상이사 : 재청하다
- 방영순이사 : 재청하다.
- 장영순의장 : 동의와 재청에 따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 제2호 의안 :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대표이사선임(안)

○ 장영순의장 :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대표이사 장영순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대표이사선임을 설명하고, 정관 19조에 의거 임시의장으로 상임이사노희원을 지명하다.

○ 노희원임시의장 : 제3호 의안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대표이사 선임안을 상정하다.

○ 노희원임시의장 : 장영순대표이사의 임기가 2021년11월29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관 제18조에 의거 연임여부를 물으며 이사님들께 의견을 요청하다.

○ 이상주이사 : 장영순대표이사님은 본 법인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 탁월한 역량과 최선의 노력으로 임하셔서 현재의 발전을 이루셨으므로 원안에 동의하다.

○ 흥인식이사 : 연임에 동의하다.

○ 고윤순이사 : 재청하다

○ 방영순이사 : 재청하다.

○ 신진상이사 : 재청하다.

○ 이충호이사 : 재청하다.

○ 노희원임시의장 : 동의와 재청에 따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호 의안은 장영순 대표이사가 연임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3호 의안 :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이사 선임(안)

○ 장영순의장 : 제3호 의안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이사선임안을 상정하다

○ 장영순의장 : 먼저, 이상주·이충호·흥인식 이사의 임기가 2021년11월29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관 제18조에 의거 연임여부를 물으며 이사님들께 의견을 요청하다.

○ 노희원이사 : 이상주·이충호·흥인식 이사님은 법인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으므로 원안에 동의하다.

○ 신진상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 방영순이사 : 재청하다.

○ 장영순의장 : 임기만료인 황금복 이사의 퇴임으로, 현재 계양다문화가족지원 센터장으로 재직 중인 권도국님을 신규이사로 추천하다.

○ 홍인식이사 : 권도국센터장은 사회복지전문가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에 동의하다.

○ 방영순이사 : 재청하다.

○ 노희원이사 : 재청하다.

○ 장영순의장 : 동의와 재청에 따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호 의안은 이상 주, 이충호, 홍인식 이사의 연임과 권도국님의 신규이사 선임을 선포하다.

- 제4호 의안 : 예규세칙 제·개정(안)

○ 장영순의장 : 제4호 의안 예규세칙 제·개정안을 상정하다

○ 장영순의장 : 본 법인은 2011년 12월 23일 이사회의를 통해 손과손 제규정 전면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법인의 발전에 따른 운영체계의 확보, 철학과 비전의 공유, 발전모델 개발, 강력한 실천력과 규범성 향상을 이루었다. 이번 예규세칙 제·개정안은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신설되거나 개정된 법과 지침 등에 맞춰 각 기관별로 예규세칙을 재정비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장영순의장 : 예림원, 예림공동생활가정, 예림일터, 한인해부평의 세칙개정안과 ~~해인한의 세칙제정안~~이며,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보내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이사님들께 검토한 의견을 요청하다.

○ 홍인식이사 : 제·개정하고자 하는 예규세칙안은 각 기관과 대표이사가 충분히 숙고하신 결과라 생각하며 원안에 동의하다.

○ 노희원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 방영순이사 : 재청하다.

○ 이충호이사 : 재청하다.

○ 고윤순이사 : 재청하다.

○ 장영순의장 : 동의와 재청에 따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6. 폐회

○ 장영순의장 : 폐회 동의를 확인한 결과 전원이 찬성하여 오전 11시 3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위와 같이 의결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인감날인 하다.

2021. 10. 14.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대표이사

장영순



상임이사

노희원



이 사

이상주



이 사

이충호



이 사

홍인식



이 사

방영순



이 사

신진상



이 사

고윤순

